#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30

발의연월일: 2020. 9. 18.

발 의 자:고용진·남인순·박완주

양정숙 · 오영환 · 이성만

이용빈 · 장철민 · 정춘숙

주철현 의원(10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세금의 징수절차는 자진납부, 납부고지, 독촉으로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와 압류, 매각, 청산의 순서로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인체납처분으로 구분됨.

그런데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세통칙법 및 국세징수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체납처분을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 징수로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10조, 제23조 등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03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##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"체납처분비(滯納處分費)"를 "강제징수비(强制徵收費)"로,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"체납처분의"를 "강제징수의"로,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하며, 같은 조 제1 2호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한다.

제23조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24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"체납처분비"를 각각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2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"체납처분비"를 각각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25조의2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28조제3항제3호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"체납처분비"를 각각 "강제징수비"로 한다. 제34조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,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, "체납처분비"를 각각 "강제징수비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"체납처분에"을 각각 "강제징수에"로, "체납처분비"를 각각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37조 중 "체납처분비"를 각각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,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 한다.

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41조제1항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42조제1항 본문 중 "체납처분비"를 각각 "강제징수비"로,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 한다.

제51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"체납처분비"를 각각 "강제징수비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한다.

제53조제2항 중 "체납처분비"를 각각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83조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84조의2제3항제2호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한다. 제87조제4항 중 "국세체납처분"을 "국세강제징수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강제 징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" <u>체납처분비(滯納處分費)</u> "란	6 <u>강제징수비(强制徵收費)</u>
「국세징수법」 중 <u>체납처분</u>	<u>강제징수</u>
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	
압류, 보관, 운반과 매각에	
든 비용(매각을 대행시키는	
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)	
을 말한다.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"공과금"(公課金)이란 「국	8
세징수법」에서 규정하는 <u>체</u>	<u>강</u>
<u>납처분의</u> 예에 따라 징수할	<u>제징수의</u>
수 있는 채권 중 국세, 관세,	
임시수입부가세, 지방세와 이	
와 관계되는 <u>체납처분비</u> 를	<u>강제징수비</u>
제외한 것을 말한다.	
9. ~ 11. (생 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"보증인"이란 납세자의 국	12
세 또는 <u>체납처분비</u> 의 납부	<u>강제징수비</u>
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.	
13. ~ 21. (생 략)	13. ~ 21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서류 송달의 방법) ① (생	제10조(서류 송달의 방법) ① (현

략)

② 납세의 고지·독촉·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 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 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 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소득 세법」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 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, 「부 가가치세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 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 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 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 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.

### ③ ~ ⑩ (생 략)

제23조(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 저 세의무의 승계)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

행과 같음)
② <u>강제징수</u>
i
③ ~ ⑩ (현행과 같음)
세23조(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
세의무의 승계)

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.

제24조(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의 승계)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[「민법」 제1000조, 제1003조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(受遺者)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또는 「민법」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 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## ② (생 략)

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 납처분비를 「민법」 제1009조·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상속인

강제징수비
제24조(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
의 승계) ①
<u>강제징</u>
<u> </u>
3
<u>강</u>
<u>제징수비</u>

중에 수유자 또는 「민법」 제 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 이 경우 각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④ ~ ⑥ (생략)

제25조(연대납세의무) ① 공유물 지 (共有物), 공동사업 또는 그 공 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 되는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는 공 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 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분할법인"이라 한 다)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

<u>강제징수비</u>
<u>강제징수비</u>
<u>.</u>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연대납세의무) ①
<u>강제징수비</u>
②

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 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<u>체납</u> <u>처분비</u>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 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### 1. ~ 3. (생략)

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#### 1. • 2. (생략)

④ 법인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<u>체납</u>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제25조의2(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제 「민법」의 준용)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<u>체납처분</u> 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

관하여는 「민법」 제413조부	
터 제416조까지, 제419조, 제42	
1조,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	
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	
다.	<b>–</b> .
제26조(납부의무의 소멸) 국세 및	제26조(납부의무의 소멸)
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	<u> 강제징수비</u>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때에 소멸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)	제28조(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	③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	
니한다.	<u>.</u>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세법에 따른 <u>체납처분</u> 유예기	3 <u>강제징수</u>
간	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32조(담보의 변경과 보충) ①	제32조(담보의 변경과 보충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	②
가액 감소, 보증인의 자력(資	
力)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	

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<u>체납</u>

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 징수비-----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 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 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. 제33조(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) 제33조(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)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 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----강제징수비-----수 있다.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 공받은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가 ----강제징수비---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. -강제징수비----. 제34조(담보의 해제) 세무서장은 제34조(담보의 해제) -----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강제징수비-----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다. 제35조(국세의 우선) ① 국세 및 제35조(국세의 우선) ① ---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강제징수비-----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

-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지방세나 공과금의 <u>체납처분</u>을 할 때 그 <u>체납처분</u>금액 중에서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 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
- 2. 강제집행·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제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,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
- 3. ~ 5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제36조(압류에 의한 우선) ① 국 세 <u>체납처분에</u>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 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 또는 지방세 의 교부청구(「국세징수법」 제57조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가 있으면 압류와 관 계되는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<u>체납</u>

	·
	 <u>강제징수</u>
	를강제징수
	<u>강제징수비</u>
	<u>강제징수비</u>
2.	
	<u> 강제징수비</u>
3	~ 5. (현행과 같음)
	) ~ ⑥ (현행과 같음)
	조(압류에 의한 우선) ①
	- <u>강제징수에</u>
	<u>강제징수비</u>
	<u>강제징수비</u>
	<u>강제</u>

<u>처분비</u>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 하여 징수한다.

② 지방세 <u>체납처분에</u>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에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 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는 압류에 관 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.

제37조(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)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<u>체납처분</u> 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.

제38조(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)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

<u> 징수비</u>
 ② <u>강제징수에</u>
<u>강제징수비</u>
<u>강제징수비</u>
 제37조(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) -
<u>강제징수비</u> <u>강제징수</u> <u>강제징수</u> <u>비</u>
 제38조(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) ①
<u>강제징수비</u>
<u>강제징수</u> <u>를</u>

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#### ② (생략)

제39조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) 7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 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 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 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출자총액으 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 는 주식 수(의결권이 없는 주 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39조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)
<u>강제징수비</u>
,
1.•2.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) 제40조(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) ① 국세(둘 이상의 국세의 경 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)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 점주주(이하 "출자자"라 한다) 의 재산(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)으 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---강제징수비-----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 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41조(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 제41조(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) ① 사업이 양도·양수된 의무) ① -----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 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 에 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-----강제징수비--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

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

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 세의무를 진다.

#### ② (생략)

제42조(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) ① 납세자가 국세 및 체 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 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「국세징수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그 국세의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② (생 략)

제51조(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)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(세법에 따라 환급세

② (현행과 같음)
제42조(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
의무) ① <u>강</u>
<u>제징수비</u>
강제징수를
<u>성세성기월</u>
강제징수비
,
② (현행과 같음)
제51조(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
귤) ①
<u>강제징수비</u>

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)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,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착오납부·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에 충당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(「국 세징수법」 제14조에 따른 납 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) 및 제3호의 국 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 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.

# 1. (생략)

- 2. 체납된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
   (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</u>를 포함한다)
- 3. (생략)
-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

②
<u>강제징수비</u>
1. (현행과 같음)
2 <u>강제징수비</u>
<u>강제징수비</u>
3. (현행과 같음)
③

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<u>체납</u>
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
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
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
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.

- ④ ~ ⑧ (생 략)
- 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 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「국세 징수법」의 고지·독촉 및 <u>체납</u> 천분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① · ① (생 략)

제53조(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저의 양도와 충당) ① (생 략)

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<u>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</u>에 충당하고,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.

<u>강제</u>
<u> 징수비</u>
,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9
<u>강</u> 제
<u> 징수</u>
⑪·⑪ (현행과 같음)
세53조(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
의 양도와 충당) ① (현행과 같
승)
②
<u>강제징수비</u>
<u>강제징수비</u>

- 제84조의2(포상금의 지급) ①·② 7 (생 략)
  - ③ 제1항제2호에서 "은닉재산"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, 예금, 주식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·무형의 재산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<u>체납처분</u> 절차를 시작한 재산
  - 3. (생략)
  - ④ ~ ⑥ (생 략)
- 제87조(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 전 한 징계 등) ① ~ ③ (생 략)
  -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

제83소(고지금액의 최저한노)
<u>강제징수비</u>
제84조의2(포상금의 지급) ①・②
(현행과 같음)
③
1. (현행과 같음)
2
<u>강제징수</u>
3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7조(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
한 징계 등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<b>4</b>

<u>국세강제징수</u>